

‘코로나19’ 확산방지를 위한 조정안 「2020년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」 세부안내

- (목적) 지역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‘코로나19’ 확산 방지를 위해 조정안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함
- (내용)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 안내

○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

1. 개방성 ⇒ 현행 유지
2. 참여성 ⇒ 세부안내
3. 지속가능성 ⇒ 세부안내
4. 다양성 ⇒ 세부안내
5.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⇒ 지자체 별 조정

*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변경(안)(2020. 4. 23.)과 2020년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계획변경 통보(2020. 6. 15.)를 기반으로 세부사항 안내

○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안내 - ‘참여성’, ‘지속가능성’, ‘다양성’

구분	현행	선정기준 및 세부 안내사항
2. 참여성		
가.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	○ 연 1회 이상 *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실시기록 - 신입원아 90% 이상 부모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	○ 완화기준 * 서면안내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경우도 인정(단, 연간운영계획에 신입 원아 오리엔테이션 명시)
나. 부모 개별 상담	○ 연 2회 이상 * 영유아 90% 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. 단,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	○ 현행유지
다. 어린이집 운영위원회/총회	○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*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, ② 회의록, ③ 회의결과 안내 공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- 협동어린이집의 경우,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"정기(임시)총회" 실시횟수를 평가(분기별 1회 이상) ① 총회운영 관련 조판 정관 ② 총회 개최 안내 공지 ③ 총회회의록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	○ 완화기준 * 운영위원회 분기별 진행계획이 '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'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, 외부인 출입금지·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한 부분 인정(세부안내) * 협동어린이집의 경우, 총회 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실적 인정
라. 부모교육	○ 연 2회 이상 * ① 연간운영계획, ② 실시 횟수, ③ 실시기록 -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 실시	○ 현행유지(세부안내) * 부모교육이 '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'에 따라 대면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역할, 양육정보 등 자료제공 시에도 인정(단, 제시된 증빙자료 구비)

구분	현행	선정기준 및 세부 안내사항
		* 반드시 어린이집 자체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외부기관(육아종합지원센터 비대면 온라인교육 포함)과 연계한 부모교육도 인정(단. 제시된 증빙자료 구비)
마. 부모참여 프로그램	○ 분기별 1회 이상 * ①연간운영계획, ②실시 횟수, ③실시기록	○ 완화기준 * 부모참여프로그램 분기별 진행계획이 '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'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, 외부인 출입금지·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연기하고 관련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였을 경우 인정 (세부안내) * 2020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면접촉이 적은 부모참여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 *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지역별 방역지침에 근거,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실시 못하게 된 상황이면, 연기 및 취소도 인정(계획, 연기 및 취소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)
바. 부모 만족도조사	○ 연 1회 * 연간운영계획, 결과기록	○ 현행유지
사. 부모 어린이집 참관	○ 연중 운영 * ①참관안내문 현장 게시(참관자격, 시기 및 방법 등) ②부모참관 상시운영(현장확인)을 모두 충족해야 함	○ 현행유지 (세부안내) *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'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, 외부인 출입금지·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, 가정에 이를 안내하면 인정(단, 참관안내문의 참관자격, 시기 및 방법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출입제한을 함께 명시하며, 안내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함)

3. 지속가능성

가. 부모참여 활동 수요조사	○ 연 1회 * ①결과기록, ②실시횟수, ③수요조사 반영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	○ 현행유지
나. 부모참여 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	○ 분기별 1회 이상 * ①연간운영계획 ②안내문(참여안내 및 결과안내 ③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※ 안내문에는 미참여 부모의 활동 독려 포함	○ 완화기준 *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'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, 외부인 출입금지·자제 기간이었을 경우에는 부모참여활동 계획의 변경 사항을 부모공지(안내)하였으면 인정 (세부안내) * 명시된 연간운영계획은 부모참여활동(부모교육, 부모참여프로그램 등)의 연간계획을 의미하며, 정기안내 공지여부를 연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님

4. 다양성

가.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	○ 부모참여활동 시 * 부모참여활동(부모교육, 부모참여프로그램)을 연간 균형적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여 운영해야 함	○ 현행유지 (세부안내) *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실시하였으면,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양성이 다소 제한되었을 경우에도 인정
나.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	○ 연 2회 이상 * 부모참여활동(부모교육, 부모참여프로그램) 중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활동이 있어야 함 *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(부모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)	○ 현행유지 (세부안내) *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지역사회 공원, 산책로 및 시설 방문 위주로 실시 * 지역사회 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과 연계하여 부모 및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등 온라인 교육, 화상 교육 시에도 인정